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8055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.2㎡를 인도하고,
나. 2018. 12. 25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박우근

별지